

Maker사업지원센터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Maker사업지원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Maker사업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재학생의 창의 창작 활동 지원, 경기북서부 지역 주민의 메이커 운동 확산 및 지원, 제조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대학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수행
2.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관한 교육, 체험 및 제작 활동 지원
3. 드론과 관련한 교육, 체험 및 제작 활동 지원
4.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교육, 체험 및 제작 활동 지원
5. 센터 및 Maker 사업의 활성화(세미나, 행사, 홍보 등)를 위한 활동
6. 한국항공대학교 학생, 지역주민의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
7. 한국항공대학교 학생, 지역주민의 창업을 위한 지원
8. 지역 기업을 위한 장비, 인력, 전문가, 기술 등의 지원
9.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산학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10. 전문 메이커가 되기 위한 인력 양성
11.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소재)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본교 외부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팀) ① 센터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팀을 두며, 참여인력은 본교 교직원 및 신규 고용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팀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하부조직) 센터는 필요한 경우 운영팀 외에 다른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본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2. 센터의 예·결산
 3. 센터 사업계획
 4.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 혹은 부센터장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및 운영

- 제9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지원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 (지원금 관리 및 회계적용)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원금, 수입금 관리 및 회계업무는 제9조에 명시된 재정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